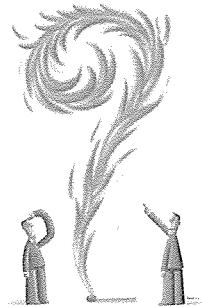


양돈협회 양돈농가 상담 코너



작년 본회에서 2005년부터 양돈자조금 사업의 일환으로 양돈농가 상담코너를 마련하여 농가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이를 상담건수 중 주요 사안을 선별하여 게재코자 한다. -편집자 주-

◎ 상담사례 1 : 경북 경산에서 문의한 내용으로, 고속철도 공사에 따른 토지사용에 관한 문의였다. 본 농가는 17년전 축사를 짓기 위해 도로가 필요함에 따라 이웃 땅을 도로로 사용하기 위해 사용승낙서를 받고, 그 땅을 도로로 사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고속철도 공사가 진행되면서 땅주인은 일정 보상액을 받고 땅을 매도하였으나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평균 감정가의 1/4수준이어서 땅주인은 나머지 3/4을 본 농가에 요청하였다. 또한, 고속철도 측에서는 매수한 땅을 막아 본 농가로 들어오는 돼지 출하차량이나 사료운송 차량들이 농장내로 들어올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본 농가에서는 '토지보상가격 차액을 의무적으로 지불해야 하는지?', '고속철도측의 일방적인 장애물 설치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를 했다.

토지보상금 차액보전건은 본 농가가 고의로 손해를 끼친 것이 아니고 사용승낙서를 받고 서로 합의하에 의한 것이다. 또한 땅 주인 역시 토지 수용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양 당사자 합의하에 보상액을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또한, 부동산 용익물건법 중 지역권에 의해 고속철도측에서 토지를 매입한 순간 본 농가가 토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허가 역시 이전된 것이 된다. 그러므로 농가에서는 고속철도측에 대체 도로를 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상담사례 2 : 청주에서 양돈장을 경영하고 있는 양돈 농가로 충북 음성에 비육돈 농장을 만들려고 하니 음성군청이 양돈장을 광범위한 오염을 시키고, 지하수를 고갈시키고, 생태를 파괴한다는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이에 음성군청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본 양돈농가가 승소했으나 음성군에서 2심을 제기한 상태이다. 1심 진행시, 담당 판사가 직접 현장을 확인한 결과 농장 허가 날 지역이 주변과 격리된 지역이고 주변 환경에 그리 큰 생태적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으나 음성군청은 계속 2심을 진행 중이다. 이에 양돈협회에서 대응해주기 바란다는 내용이었다.

양돈산업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는 자원의 일종으로 정부에서도 지난 8월29일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가축분뇨를 화학비료로 대체하고 있어, 토양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비료로 접근하고 있다. 이에 양돈협회에서는 양돈산업이 오염산업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기 위해 음성군청에 위의 사실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와 관련된 문제점을 언론사에 흥보하였다.

<양돈농가 상담코너 – 양돈농가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사항을 양돈협회에서 상담해 드리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드립니다. •문의 : 대한양돈협회 지도부 전화 : 02-581-9751~4, 팩스 : 02-581-9768>